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15호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하여 교통, 환경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3조).

(1) 대전광역시장의 주변지역에 초·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

선사업,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2) 대전광역시장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대전광역시장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2)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경제산업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주변지역 소재 기관 또는 단체 대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

(3)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산업
건설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lgsung64@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하여 교통, 환경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초·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2.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주변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3.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4. 그 밖에 시민 복리 증진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정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

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